

# 재심소장

재심원고(원고) 임그루

우편번호 36322

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 다세대주택a동 103호

휴대폰 010-2878-2177

재심피고(피고)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

우편번호 04147

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

(피고보조) (주)KT 대표이사 황창규

우편번호 13606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

## 소명 재심청구의 소

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.11.24.선고 2017재누139판결

## 재심 할 판결의 표시

### 주 문

1.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.
2.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## 재심청구취지

1. 원판결을 취소한다.

## 재심청구원인

### 1. 재심사유

민소법 제451조①항 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

### 2. 서울행정법원 99구23983 기각판결 내용

①.갑3의 1~14호, 갑4의 1~7호, 갑6의 1~3호, 갑7의 1~7호, 등은 피고가 구체적 사실을 인정한 위법 부당행위인데 3p 나.인정사실 [채택증거] 와, 판결문에 기록이 없습니다.

②.원심판결(서울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). '2.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' 나.인정사실 [채택증거 : 갑1의 2호증' 갑14의 1,2,3호증,] 은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. 제출한 것은 갑1호증. 갑14호증 인데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

원심판결(서울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) '2.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' '나. 인정사실' '채택증거'를 보면 '갑8의 1, 3, 6, 8'인데 또 '배척증거'에 '갑8의1, 3, 6, 8'로 되어 있고, 다른 부분도 이와 비슷합니다.

### 2. 있었던 일

서울고등법원 2000누6383 기각, 대법원2000두8004 심리불속행기각. 및 여러 번의 재심(서울고등법원. 대법원)27번 기각 혹은 각하 판결했습니다.

※.참고

처음 재심 2001재누15 때 있었던 일입니다. 2004년 4월30일 변론 때 그 당시 노무현대통령님 때의 실세인 문재인(지금은 대통령)님이 재판장님이었습니다.(3명의 판사님 중 가운데 재판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제 사건을 취급했습니다.). 기각 판결문 2001재누15 에는 다른 이름입니다.

3. 맺음

①.원고의 증거와 주장내용을 보면,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피고의 위법 부당성을 현저히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도 이유 없이 이러한 사실을 묵살합니다.

첨부

1. 고등법원판결 등본 1부(총 3장)

1. 사본 재심소장 2부

참고: 피고에게 판결문 송달되었기에 고등법원판결 등본생략

1. 납부서 1통

2018년 3월 일

원고: 임 그 루

서울고등법원 귀증